

대법원 2005. 6. 10 선고 2004다58871 판결 [보증채무금]

참 조 조 문

민법 제110조, 제390조, 제398조, 상법 제639조, 제644조, 제665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5. 6. 10 선고 2004다58871 판결

부산고등법원 2004. 9. 10 선고 2003나14959 판결

전 문

【원고, 피상고인】 주식회사 AA건설(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A외 1인)

【피고, 상고인】 서CA보험 주식회사(소송대리인 변호사 최BB)

【원심판결】 부산고등법원 2004. 9. 10. 선고 2003나1495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,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이행보증기간 중인 2001. 6. 30. 동평토건의 부도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동평토건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86,134,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, ‘동평토건이 다음날 부도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무효’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, 동평토건이 피고에게 계약보증신청을 하여 보증서를 제출받은 날이 동평토건이 부도나기 하루 전이었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동평토건의 채무불이행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,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, 이

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8다63162 판결, 2002. 11. 8. 선고 2000다19281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은, ‘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평토건이 부도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숨기고 허위의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하였고,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.’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, 원고가 동평토건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, 동평토건의 부도가 발생한 2001. 6. 30.까지 이 사건 공사 및 동평토건이 원고로부터 수급 받은 다른 공사들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,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원고 작성의 2001. 6. 29.자 무사고확인서는 ‘2001. 2. 7.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’라는 내용으로서 위 일시까지 동평토건이 공사중단 등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제와 부합하는 점, 원고가 동평토건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계약보증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공사대금을 동평토건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동평토건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직후 동평토건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원고가 동평토건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

원심은 나아가, ‘계약보증금이 당연히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평토건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그 전액이 원고에게 당연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, 다만 원고가 동평토건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손해를 입증하여 위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인데,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

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’는 주장에 대하여는,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동평토건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발생 및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.

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.

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이규홍(재판장)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(주심)